

방 송 통 신 위 원 회

심의 · 의결

안전번호 제2014 - 56 - 227호 (사건번호 : 201411조사030~032)

안 건 명 SK텔레콤(주), (주)KT와 (주)LG유플러스의 단말기유통법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방안에 관한 건

피 심 인 SK텔레콤(주)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2가 11 대표이사 하성민
(주)KT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불정로 90 대표이사 황창규
(주)LG유플러스
서울특별시 중구 소월로2길 30 대표이사 이상철

의결연월일 2014. 11. 27.

주 문

1. 피심인 법인 및 각사 장려금과 관련된 이동통신 영업담당 임원에 대하여 형사고발한다.
2. 피심인 및 유통점의 과징금 또는 과태료 부과 등의 제재에 대해서는 다음 위원회에서 의견진술 등의 절차를 거쳐 논의하기로 한다.

이 유

1. 조사 대상 및 주요 경과

- **【조사 대상기간】** 2014.10.31.(금) ~ 11.2.(3일간) 기간 중 발생한 이동통신단말장치유통구조개선에관한법률(단말기 유통법) 위반 행위에 대해 조사
- 조사대상 : 총 44개 유통점
 - 불법행위 신고 및 제보 받은 유통점(현재 34개)
 - * 이통사 신고건 : SKT 3건, KT 4건, LGU+ 3건
 - * 민원 및 현장제보 : 22건
 - * 파파라치신고 : 2건
 - 조사대상 기간 중 가입자 모집실적 상위 유통점(10개)
 - 총 44개 조사대상 유통점 중 ① 대리점 2개, ② 대리점 겸 판매점 1개, ③ 이통3사 겸업 판매점 41개
- **【주요 경과】** '14.11. 3. ~ 11.20. : 총 44개 유통점에 대한 현장조사
 - 조사대상 유통점 중 3개점이 현재까지 휴업하고 있어 조사하지 못하였으나 추후 계속 조사 예정임

2. 사실조사 결과

- ① (지원금 과다지급) 조사대상 기간 중 44개 유통점에서 모집한 전체 1,298명의 판매자료를 분석하였음
- 34개 유통점에서 540명의 가입자에게 공시지원금을 평균 272천원

초과 지급한 사실을 확인하였으며

- 이 중 아이폰6와 관련해서는 425명의 가입자에게 공시지원금을 평균 288천원 초과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음

구 분		SKT	KT	LGU+	계
조사대상 가입자수	전체	493	471	334	1,298
	아이폰6	276	345	309	930
위반 건수	전체	187	172	181	540
	아이폰6	105	140	180	425

② (대리점 장려금 상향·시달) 이통3사는 가입자 모집을 위해 이용자에게 주는 공시지원금 이외에 단말기 판매 장려금(‘리베이트’라고도 함)을 대리점에 지급하는 것이 관례임(가입자당 20만원 내외)

○ 이통3사는 10월 31일 아이폰6 신규 출시일을 기점으로 주요 단말기에 대하여 판매 장려금을 상향 조정하기 시작하여

- 11월 1일에는 아이폰6_16G에 모델에 대해 최고 55만원 수준까지 장려금을 확대 지급하였음

○ 건당 판매 장려금을 상향 조정할 경우 이통3사의 서비스·품질·요금의 경쟁력에 큰 차이가 없어 불법 지원금으로 사용되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

- 유통망 관계자에 의하면 판매 장려금이 30만원을 초과하면 이는 불법 지원금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진술

< 이통3사의 아이폰_16G 장려금 변동 추이 >

(단위 : 천원)

일자·시간	SKT 장려금	KT 장려금	LGU+ 장려금
10.31.00:00	240	270	225
10.31.19:00	-	-	260
11.01.10:00	-	300	302
11.01.12:00	-	-	368
11.01.14:00	-	450	-
11.01.15:00	320	-	412
11.01.17~18:00	470	550	-
11.01.19:30	540	-	-
11.02.14:00	240	250	269

* 위 수치는 이통3사의 본사 또는 수도권 본부의 대리점에 대한 장려금 시달지침에 근거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판매점단에서 운영하는 실제 장려금 수준은 이통사가 대리점에 주는 수시 그레이드 장려금(일정 수량 이상을 모집하는 경우에 추가로 지급되는 리베이트 이하 “그레이드 장려금”이라고 함)과 여기에 더해서 대리점이 요금수익 등 마진을 포기하고 리베이트를 올려주는 것 등에 따라 더 높음

- 이통3사는 ‘이러한 장려금 상향 조정이 경쟁사의 판매 정책에 대응하기 위하여 불가피하였다’는 취지의 의견을 진술하였음

< 이통3사의 면담조서 중에서 >

- 3시, 4시, 40~50만원으로 리베이트가 올라가는 상황에서는 갭이 크게 벌어지기 때문에.. K가 못참고 정책을 냈고, 우리가 따라갔다는 측면이 있습니다. (SKT ○○○ 팀장)
- 정상적인 경쟁으로 인한 순감이면 참을 수 있으나 10월 31일, 1일 시작부터 타사의 정책 차이로 가입자 순감 속도가 너무 빠르고, 그래서 이런 상황에 현명하게 대처하지 못했던 점 죄송합니다. (KT ○○○ 상무)
- KT가 14시에 정책을 추가하였고, 15시에 SKT가 따라갔습니다. 이를 확인한 연후에 저희도 15시30분에 본사정책을 4만원 추가하여 30만원으로 냈습니다. (LGU+ ○○○ 차장)

3. 위법성 판단

- 유통점이 공시지원금을 초과하여 일부 이용자에게 지급한 행위는
 - 해당 유통점과 이통3사가 단말기 유통법 제3조 부당한 이용자 차별 금지 및 동법 제4조 지원금의 과다지급 제한 및 공시관련 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됨
- 또한, 이통3사는 평소와 다르게 대리점에 지급하는 장려금을 대폭 상향 조정한 행위는
 - 유통점에서 일부 이용자에게 공시를 초과하는 차별적인 지원금이 지급되도록 유도한 것임
 - 이는 이통3사가 대리점으로 하여금 이용자에게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지시, 유도하지 못하도록 한 단말기 유통법 제9조(공정한 유통환경 조성) 제3항을 위반하였다고 판단됨

4. 결론

상기 피심인의 단말기 유통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같은 법 제20조(벌칙) 및 제21조(양벌규정)에 따라 “주문1”과 같이 결정한다.

상기 피심인과 유통점들의 단말기 유통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같은 법 제14조(시정명령) 및 제15조(과징금), 제22조(과태료)에 따라 “주문2”와 같이 결정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위와 같이 의결하였다.

2014. 11. 27.

방 송 통 신 위 원 회

위 원 장

최 성 준



부위원장

허 원 제



위 원

김 재 홍



위 원

이 기 주



위 원

고 삼 석

